석유협회 10년의 발자취와 미래상

金 演 會
〈대한석유협회 홍보과장〉

석유협회는 지난 9월 29일로 창립 열돌을 맞았다. 10년전 제2차 석유위기의 소용돌이속에서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석유협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업계와 호흡을 같이 하면서 업무개발과 확충을 통해 정유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석유협회 창립 열돌을 맞아 지난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생각해 본다.

석유협회 창립의 배경

대개의 업종단체가 그러하듯이, 석유협회의 출범도 그 설립필요성에 대한 정유업계와 관계당국의 공통인식에서 출발되었다. 그러나 석유협회의 설립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일치했으나, 협회의 성격과 진로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새로 설립되는 석유협회는 명실공히 정유회사들이 주체가 되어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업계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구로 존재시켜야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정부측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석유문제는 국민경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협회를 전적으로 업계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정부측도 인정할 수 있는 인원으로 협회를 구성하여 적어도 석유협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가장 권위가 있어야 하고, 또 협회가 정부나 업계를 리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정부측의 생각이었다.

석유협회 초대회장이었던 劉載興씨는 협회창립의 배경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1980년 9월 석유협회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역사가 20년에 가까웠지만, 정유사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문제를 토의할 기회도 없었고, 또 구심체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기구도 없었습니다. 그 큰 이유의 하나는 그동안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이 너무 메이저에 의존해온 데다가 주요석유문제는 정부가 직접 처리해 왔기 때문에 업계 스스로가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기구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유업계도 점차 규모가 확대되어 정유사가 5개로 늘어나고, 또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거치면서 정부도

세부적인 부문에서 터치하지 못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油公의 50% 지분을 갖고 있던 걸프가 철수하게 되자 이 기회에 韓國의 동업자들이 모여서 석유문제를 토의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또 국민을 위한 정유회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정유회사들 스스로가 구심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분위기속에서 석유협회가 창립된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종류의 협회나 조합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너무 많다고 하여 유사단체나 기구를 통폐합해 나가던 상황이었지만, 석유협회만 새로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은 원유의 안정공급확보와 국민을 위한 석유업계의 자세를 가다듬는 하나의 계기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석유협회의 태동

석유협회의 설립움직임은 1980년 6월부터 태동하기 시작했다. 그 해 6월 17일에 한국석유개발공사회의실에서 최석환이사 주재로 5개 정유사 법제부장들이 모여 석유협회 설립에 관한 1차 실무자회의를 갖고 협회의 명칭, 사업목적, 회원자격, 임원의 정수등 정관조항들을 검토하고 그후 2차례의 회의를 거쳐 정관 초안을 작성했다.

협회의 명칭은 대한석협회로, 회원자격은 총회가 정하는 규모이상의 석유정제시설을 갖춘 국내정유회사와 한국석유개발공사로 한정시켰다.

1980년 7월 3일에는 최동규 동력자원부 차관(당시)이 정유사 사장들을 초치하고 실무자회의에서 성안한 정관사항에 대한 정부의 의견개진에 이어 협회기금 조성방안과 협회설립준비실무위원회의 주관회사를 유공으로 정하고 각사 법제부장 중심의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설립사무를 진행토록 하였다. 이때 정유5사와 유개공에서 지명된 설립준비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았다.

한홍우(유공), 진영일(호유), 나옥균(경인), 유기택(쌍용), 황운영(극동), 유진성(유개공).

1980년 7월 9일에는 협회설립준비 실무위원회가 마련한 제반의안을 놓고 6개 회원사대표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석유협회 발기 창립총회가 유공 회의실에서 열렸다. 총회에서는 협회의 명칭,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과 회원의 자격, 임원의 수와 임기등을 규정한 정관을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통과된 정관에 따라 회원의 자격기준을 석유정제시설의 규모를 1일 원유처리 1만배럴 이상으로 정하였고, 임원으로는 이사 6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였는바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사 유재흥(劉載興) 유공 사장
이사 구평회(具平會) 호유 사장
이사 김종희(金鍾喜) 경인 사장
이사 이승원(李承源) 쌍용 사장
이사 장홍선(張洪宣) 극동 사장
이사 김동조(金東祚) 유개공 사장
감사 안효영(安孝榮) 공인 회계사

회장으로는 이사중 유재흥 이사를 선임하고 설립부담금으로는 각 회원이 2천만원씩 협회에 납부(유개공의 미납은 양해)키로 하였다. 그리고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10번지(삼일로 B/D 23층)로 정하였다.

1980년 7월 18일에는 동력자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석유협회 설립 허가를 받고자 발기인대표자 명의로 1백여 페이지 달하는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동력자원부에 법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8월 2일에 동력자원부로부터 유정제1337-1408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귀하가 제출한 1980년 7월 18일자로 당부에 요청하신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의 설립허가 신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국내 에너지수요의 60%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정유회사와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를 창립하여 국내의 석유산업에 관한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국내석유업계의 의견 조정집약, 원유확보를 위한 민간외교 지원등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판단되므로 민법 제32조의 규정, 동력자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설립허가에 이어 8월 4일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8월 5일에는 서울민사지법에 제1837호로 등기를 마침으로서 설립에 따른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를 끝내고 직원 공모를 한 결과 14명 채용에 888명이 응모하였는바 직급별 채용인원과 응모자수는 다음과 같다.

직 급	채용인원	응 모 자
부·실장	3	151
과 장	4	240
사 원	7	497
계	14	888

석유협회의 출범

석유협회는 아직 상근부회장은 선임되지 않았지만, 창립총회, 법원등기, 직원채용등 제반준비가 종결됨에 따라 1980년 9월 29일 상오 11시 삼일로빌딩 23층 석유협회 회의실에서 崔東奎동자부차관, 劉載興 석유협회 초대회장을 비롯하여 회원사대표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정식 발족했다.

당시 석유협회 출범에 거는 업계와 정부의 기대는 실로 컸다. 석유협회 창립에 있어서 동자부측에서 참여했던 李東圭 유정과장(당시)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석유협회에 대해 바라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초의 설립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활동을 기대하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수의 협회가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협회가 되어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아왔다. 그러나 석유협회만은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단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석유협회는 발족 이후에도 상근부회장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선임되지 않은채 약 6개월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석유협회는 출범 3개월만에 새 회장을 맡게 되었다. 1980년 12월 23일에 鮮京이 油公을 인수하면서 崔鍾賢 油公사장이 12월 30일 석유협회 회장을 승계했다. 그리고 1981년 3월 24일에는 咸秉昭씨(효성물산부사장)가 초대상근부회장에 취임했다. 이로써 석유협회는 외형상의 골격을 일단 완료했다.

석유협회 10년의 발자취

석유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을 통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정관 제2조)는 설립목적에 따라,

첫째, 석유 및 석유산업에 관한 지식의 발전과 보급

둘째, 국내외 석유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교환, 분석, 평가, 발간등 조사연구사업

셋째, 석유산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 및 자문

넷째, 석유산업에 관한 홍보활동

다섯째, 정부가 법령 또는 고시로 위임하는 업무

여섯째, 전항의 사업에 관련되는 기타 일체의 사업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직제의 일부 변경도 있었지만 초기에 14명으로 출발한 직원이 현재는 25명으로 늘어나 점차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가고 있는 중이며 협회설립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대정부 정책건의

협회설립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책 관련 건의문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에 보낸 것은 약 100여건이며 이중에는 원유구입에서 정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예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함으로서 정부의 석유정책 수행에 직·간접으로 협조하였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건의내용의 주종은 원유의 안정적 확보와 국내 석유제품의 적정 가격유지,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유류의 안정공급은 물론 석유화학공업에서 필요로하는 기초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 정부의 위임업무

정부의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출입추천업무이다. 원유수입, 석유제품수입, 석유제품수출, 할당관세, 긴급관세적용배제물량 추천등 다양하다. 이러한 업무는 협회가 작성한 추천요령(정부와 협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가격자유화가 이루어져 있는 나프타의 경우 한 때는 환율연동 가격을 한국화학공업협회와 매월 상의하여 수요처에 제공하기도 하였고 최근 중동사태 이후 국제 나프타값의 폭등에 따른 국내가 인상문제도 합의 가격을 유도해 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해소되고 있는 유사휘발유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운영함으로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덜어주고 유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만도 근 2억5천만에 이르고 있다.

• 석유정보수집 및 보급

석유협회의 사업중 석유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정보수집, 분석 및 보급은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이다. 해외에서 발간된 간행물을 수집하여 정보를 얻기도 하고 해외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제공하여 해외 석학들의 지식을 공급받기도 하며 해외 석유관련기관과 자료교환 및 방문을 통하여, 또는 정례모임을 실시하여 얻어 내기도 한다. 여기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1983년에 미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인 Purvin & Gertz Inc.,에 연구회원으로 가입하여 "International LPG Industry to 1995"이라는 향후 10년간의 LPG 산업전망에 대한 연구결과를 입수하여 정유회사는 물론 관계부처와 가스관련 회사에 제공하였고, 일본석유연맹과는 1985년부터 한·일석유정보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양국을 교차방문하여 자국의 석유산업 현황과 앞으로의 문제점, 세계석유시장에 대한 전망등을 기탄없이 개진하는 형태로 양국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계의 유수한 석유관련 기관과 정례적인 자료교환을 통하여 업계와 관련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책자로 발간한 것을 보면 '81년에 「일본석유정책의 계보」 '82년에 「휘발유가격과 특별소비세」 「OECD제국의 석유가격 정책」, 「석유제품의 규격과 품질」 '84년에 「석유정책과 석유산업」, 「OPEC의 도전과 정유산업의 위기」, '87년에는 「정유설비 고도화 Handbook」 「일본석유관련 자료집」 '88년에 「일본에너지체제의 실태와 향후방향」, '89년에 「일본의 정제구조 및 설비고도화에 따른 조사연구」등 많은 책자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석유수급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월간 「석유자료」를 '81년 1월에 창간하여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으며 주간 「석유정보 다이제스트」를 '88년 1월부터, 「석유연보」는 '82년부터 발간하여 회원사는 물론 관계부처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 홍보활동

석유협회는 설립초기부터 정유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굴절된 인식을 시정하고 석유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홍보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협회의 주력홍보매체는 「석유협회보」라는 월간지이다. 1981년 3월에 창간된 석유협회보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석유산업정보 종합지라 할 수 있다.

매월 이슈가 되는 석유산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는 석유시론, 정책자료, 동향분석, 석유산업의 촛점, 해외논단, 석유동향지표, 특집등을 수록하고 있는 바 구독자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창간때에는 매월 1,000부를 발간하였으나 지금은 2,200부를 발간하여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바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유가 구독과 광고게재를 원하는 곳도 적지 않다.

또 한국의 석유산업 현황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영문 홍보지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를 매년 발행하여 해외 유관기관과 연구소등에 보내고 있으며, 석유문제와 관련하여 해외에 출장가는 인사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85년에는 한국의 석유산업을 소개하는 「오늘의 석유산업」, '86년에는 「석유의 기초지식」, '87년에는 전국 중학생들에게 석유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석유의 이모저모」를, '89년에는 「석유의 이해」, 금년에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석유산업 발전과정을 소개하는 「석유산업의 발전사」를 발간 보급하고 있다. 이처럼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주로 석유산업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하고 있고, 간담회나 세미나를 통한 단체홍보활동등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1981년 10월에 "'80년대 석유산업의 좌표와 진로"라는 주제를 갖고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석유세미나를 실시한 이래 매년 가을이 되면 그 해의 중요 이슈가 되는 석유문제를 갖고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전개되는 이 세미나는 금년에 10회째를 맞고 있고 또 업계와 정부의 석유산업에 대한 시각을 조명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정책간담회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석유협회의 미래상

석유협회는 지난 1980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제반업무를 대과없이 수행하여 왔다. 회원사인 정유업계뿐만 아니라 비회원사인 석유화학업계, 석유유통업계, 무역업계등 석유산업과 관계되는 모든 업계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 일례로 원유수입추천이나 석유제품추

천은 회원사들보다 비회원사에서 받아간 것이 더 많으며 석유정보 제공을 위한 각종 자료배포도 비회원사에 더 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석유협회가 모든 석유관련업계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정유5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10년동안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심어준 석유협회의 이미지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며 석유협회에 요구하는 각종 정보와 업무협조량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석유협회는 창립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젼과 꿈이 필요하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석유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맡은바 소임에 더욱 분발, 노력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해결되어야 할 몇가지 과제도 있다.

첫째,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창립초기의 조직과 임원으로서는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사무의 자동화로 어느 정도의 업무는 소화할 수 있으나, 새로운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연구개발 능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협회구성원들의 이직률을 줄이고 오로지 석유전문가가 되겠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비젼이 있어야 하겠다. 여기에는 회원사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야 하겠다. 아직 석유산업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한데 묶어 그들의 지식을 활용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협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회원사의 회비부담을 줄여야 한다. 어느 협회를 막론하고 회원 1사가 1년에 부담하는 회비가 평균 2억원을 넘는 경우는 드물다. 금년도 협회예산이 거의 1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정유5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회의 사업내용은 회원사 위주가 아닌 공익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 노력할 때 석유협회는 보다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관 보□

◎동력자원부고시제90-58호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비율등에 관한 고시중개정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을 조정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비율등에 관한 고시(동력자원부고시 제89-10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90년 9월 13일

동력자원부장관

제3조(석유의 종류에 따른 수입금의 차등징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석유의 종류에 따른 수입금의 차등징수) 프로판 및 부탄수입시에 징수하는 수입금은 수입프로판 또는 수입부탄 1메트릭톤당 미합중국 통화 0$에 납부일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0년 9월 13일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한다.